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36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김용태 · 진종오 · 박준태
김재섭 · 송석준 · 서천호
서지영 · 이종배 · 우재준
조은희 · 정동만 · 김성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전체 세대수가 아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리모델링사업은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달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시설 유발 수준은 재건축사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을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같이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증가하며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재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과 관련한 개발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은 현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의 증·개

축 또는 대수선 등을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증가 등으로 현물 가치가 하락하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리모델링사업 또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한 개발사업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과 같이 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주택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을 현금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용지의 조성과 개발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재건축사업 및”을 “재건축사업,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으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무상공급에”를 “그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⑤ (생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⑥ (생략)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⑧ (생략)

<신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에-----

-----.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⑧ (현행과 같음)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⑥ (생략)	<u>법률」 제52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u>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4. (현행과 같음) 5. <u>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u> ⑥ (현행과 같음)
---	---